

축산등록제, 농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



오정곤
경남도지회장

‘축산등록제’라는 제도가 도입된다
기에 처음에는 농가별로 등록을
필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
다면 낙농업을 경영하는데 큰 어려움
이 없으리라 생각을 했다. 하지만 알고
보니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으
로 등록을 하기 위한 관계법령을 따르
자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법령 조항들이 많다는 것
을 알 수 있다.

첫째, 농림부의 배포 자료에 의하면 도입배경에
는 사육밀도의 증가에 따라 질병 가능성이 높을
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도입한다고 한다.

그러면 소농가에서는 질병 발생률이 거의 없다
고 해석이 되는데 과연 소농가에서는 질병 발생률
이 거의 없다는 말인가?

둘째, 등록을 위한 축사면적은 100㎡(10두 규
모)농가, 50㎡이상(50두 규모)농가는 2005년까
지 등록을 해야 하며,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, 장
비 등을 구비해야 한다.

이렇게 법령대로 한다면 낙농분야 94%, 사육
두수 99%가 등록대상이 된다. 그러면 과연 몇 농
가가 낙농산업을 계속 유지 할 수 있을까?

셋째, 환경부의 악취방지 제정법이 내년 상반기
에 실시 될 것이 확실시 되는데, 그렇다면 당연히
축사 시설에도 적용될 것이다.

축산등록제 만으로도 힘겨운 우리 낙농가들에
게 악취방지 제정법까지 적용이 되니 어떻게 낙농
을 하란 말인가?

현재 국민의 먹거리인 우유의 자급
률이 67%인데, 이렇듯 우리 낙농가를
말살하여, 어떻게 원유수급을 충당하
려고 하는지 정부에 다시 한번 묻고
싶다.

기본적인 방역시설이라든지, 쌀 농
가와 연계해서 조사료의 직불제 라든
지, 이 모든 것이 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.
정부에서 위와 같은 대폭적인 지원이 있기 전에
는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다.

벼랑 끝에 선 낙농가를 바다에 추락시키지 말고
한배를 타고 같이 합심해서 항해 할 수 있도록 해
야 한다. 또한 순박한 농민을 환경법이나 오수법
으로 인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사려깊은
선처를 부탁하고 아울러 우리 낙농가들도 축산등
록제에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.

